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13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이정문
윤준병 · 이기현 · 정준호
이학영 · 박홍배 · 이재정
김 현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문화 수준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10조).

법률 제 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광산업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시행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u> <u>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u> <u>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u> <u>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u> <u>강구하여야 한다.</u>	<u>제10조(관광산업의 육성·지원)</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u> <u>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u> <u>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u> <u>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u> <u>술개발 시행 등 관광산업의 육</u> <u>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u> <u>마련하여야 한다.</u>